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시행 2021.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88호, 2021. 7. 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044-202-2436

1.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구분 과목	인정과목	레지던트 수련인정 연한
내과	없음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소아청소년과	내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산부인과	없음	
정신건강의학과	없음	
정형외과	없음	
신경외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흉부외과	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성형외과	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안과	없음	
미비인후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피부과	없음	
비뇨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내과, 마취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방사선종양학과	4년 과정의 타과(3년 과정의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제외)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마취통증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미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또는 수련이수자	1년 인정
신경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재활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결핵과	1. 내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2. 내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수련 이수자	1. 2년 인정 2. 1년 인정
진단검사의학과	없음	
병리과	없음	
예방의학과	타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예방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비뇨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핵의학과	내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주 1) 전문의 자격 취득자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2) 수련 이수자 : 해당과의 전체 수련기간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
- 3) 레지던트 수련인정 연한 : 레지던트 수련의 최대 인정 기간을 의미하며, 2개과 이상의 자격이 있는 경우라도 각 과별로 정한 인정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188호, 2021. 7.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